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모 자 보 건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전

1. 의결주문
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, 제 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, 법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미협의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, 법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가, 지방자치단체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제1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3의2. 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, 법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</u> <u>에 관한 사무</u>
4. ~ 7. (생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〉

출산정책과	
연 락 처	044-202-3395, 3396